이 보고서는 국토통일원 73년도 하반기 학술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73年 11月



연 구 기 관 : 경희대학교 국토개발연구소

연구책임자 : 이

원

설



第一章 南北接触으로서의 通信交流의 意義	3
1. 政府統一政策 의 推進現況	. 3
2. 通信交流의 範囲	. 7
3. 通信交流의 意義	9
4 . 通信交流의役割	10
第二章 東西独通信交流의 現況	13
1. 東西独의 通信交流	13
가・必要性	13
나. 範 囲	15
叶 ,寒 績	15
2.展望	18
第三章 南北通信交流의 方法 및 利害得失	21
· · · · · · · · · · · · · · · · · · ·	21
가、書信交流의 方法	21
(1) 書信交流의 前提条件	21
(2) 書信交換 方法	22
(3) 書信様式 및 内容	22
(4) 書信의 伝達保障 및 確認	23
(5) 書信의 交換場所	24
(6) 皆信 交流時의 郵票使用	2 5

*		
	-	•
(7) 書信검열 方法	26	
나。 書信交流時의 利害得失	_ •	Ł
(1) 否定的인 側面		
(2) 肯定的인 側面	3 5	
2. 電報交流의 問題	37	-
3. 電話交流의 問題	39	
가. 하틀라인	39	•
· 個人間의 通話問題 □ □ □ □ □ □ □ □ □ □ □ □ □ □ □ □ □ □ □	44	
第四章 南北接触의 進展度에 叶른 通信交流의 拡大方向	47	
1. 離散家族事業의 進展度와 通信交流	47	
2. 南北調節委員会 分科委 構成時의 通信交流問題		•
第五章 問題点 및 対策		•
1. 問題点		••
2. 対 策	57	
		; - -2

第一章 南北接触으로서의 通信交流의 意義

1. 政府統一政策의 推進現況

大韓民国政府樹立 以来 祖国統一是 위한 基本方向은 「土着人口 比例에 의한 南北韓 自由総選挙를 通해 統一民主国家를 樹立한다」 는데 두어왔다. 이러한 基本方向은 지금도 변함없는 統一政府樹立 을 위한 우리政府의 基本的인 立場이다.

그러나 国土分断이 28年間이나 계속되는 동안 南北韓이 서로 다른 理念으로 異質的인 体制를 이루어 왔기 때문에 民族的 융화를 기약할 수 없는 현상태에서는 土着人口比例에 의한 自由総選挙를 実施해서 統一政府를 樹立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다.

지난 70年8月15日 朴正熙 大統領은 光復節 26 開年 慶祝辞를 通해 「平和統一의 構想」을 내외에 천명하면서 北韓에 対하여 武力挑発을 포기하고 開発과 建設과 創造의 競争에 나설것을 促求하면서 「만일 北韓이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企図를 포기하고 이를 확신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실증한다면 統一基盤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南北間에 가로놓인 人為的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할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던 것이다.

이같은 朴大統領의 결단은 統一을 위한 現実的이며 実質的인 自主的 努力方向의 提示인 同時에 武力에 의한 南北赤化를 唯一한 統一方案으로 삼고 있는 北韓을 긴장완화의 국제조류에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統一을 平和的으로 성취할 수 있는 확고 부동한 기 반을 조성하는 적극적인 조치였던 것이다.

이러한 朴大統領의 8.15宣言을 기점으로해서 南北韓関係는 対話 없는 冷戦的 対決에서 탈피하여 平和的 統一을 現実的으로 모색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래서 이 宣言이 있은지 1년後에 우리는 国土分断에 기인하는 민족적 고통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가장 절실하고 기본적인 문제인 南北韓에 흩어져 생사조차 알수 없는 1천만 離散家族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南北赤十字会談을 제의하였고 北韓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南北関係는 4半世紀만에 절친「対話없는 対決」의 関係에서 「対話있는 相互 促求의 関係」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南北赤会談은 平和統一을 위한 南北関係의 改善을 促求한 70年8月15日 宣言이 가져다 준 첫번째 열매요 성과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対話는 民間団体間의 対話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국토분단에 기인하는 民族的 고통과 불행을 모두 제거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그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南北韓当局者間의 政治的 次元의 対話와 協調의 증진이 必要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南北間에 놓인 人道的 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民間次元의 対話인 南北赤十字会談이 시작된지 1년뒤인 72년 7월 4일에는 우리政府의 主導로 歷史的인 南北共同声明이 発養되었

던 것이다.

7.4 共同声明에서 合意한 自主的 平和統一의 基本原則은 「①統一은 外勢에 依存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自主的으로 解決해야 하며 ②統一은 서로 상대방을 反対하는 武力行使에 의거치 않고 平和的 方法으로 実現하고 ③思想과 理念,制度의 差異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民族으로서 民族的 大団結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우리의 主導에 의한 南北対話의 시작은 東西冷戰의 틈바구니 속에서 국토를 양단당한 어느분단국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적극적이면서도 현실적인 統一努力으로 우리民族은 결코분단될 수 없다는 韓民族의 統一에 대한 念願을 가장 명백히 밝힌것이다.

7.4 共同声明이 発表된 1年後인 지난 6월 23일 朴正熙 大統領께서 制約속에서 추구해오 천명한 平和統一外交政策은 그동안 冷戦体制의 던 우리의 統一接近努力을 冷戰体制를 벗어나고 있는 국제조류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現実化하는 것으로 冷戦体制의 테두리를 実効있는 流 나 보다 現実的인 状況과 여건을 바탕으로 더 한충 경주하려는 우리의 적극적이며 실천적인 통일접근책인 一努力是 그 원인이된 이다. 다시 말해서 6.23 宣言은 祖国分断의 비극을 冷戰体制의 태두리 안에서 해소하려는 종래의 제약성에서 완전히 탈피 함으로써 조국분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키는 적극적 분단 해소작업에 착수하는 동시에 그를 전제로 한 현실적 統일努力을

경주하는 가장 合理的인 統一方案의 제시인 것이다.

朴大統領은 南北韓에 형성된 異質的인 体制의 차이가 조국의 平 和的 統一을 달성하는데 있어 큰 장애가 되고 있음을 간파하고 2 年間 추진하여온 南北対話의 지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시종일과 가장 合理的이며 現実的인 統一接近方案을 제시하여 왔는데 이를 간추려 보면 ①우리의 조국통일이 아무리 우리民族의 至上課業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平和的인 方法에 의해서 自主的으로 되어야 하고 ②南北韓은 統一을 성취할 때 까지 過渡的으로 国際 聯合에 同時加入함으로써 紛争의 平和的 解決등 「유엔」 憲章 精 神에 입각하여 相互不可侵 相互不干涉의 原則을 堅持하고 分断状態 改善에 努力하여야 하며 世界平和와 国際協調에 떳떳이 기여하여 民族의 궁지를 드높여야 하며 ③祖国의 統一章 성취하는데 現実的 障碍要因이 되어 있는 体制의 차이를 教条主義的 偏執이 아닌 総和護国의 民族史的 正統性 위에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相互理解와 信頼의 발판을 넓혀 民族的 同質性을 회복해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南北対話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서로의 社会를 서로에게 開放해야 하며 ④南北間에 가로 놓여 있는 諸般 문제를 성공적으 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南北関係에서 해결하기 용이한 문제부터 시작하여 점차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지향해 나가는 단 계적이며 점진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⑤祖国統一을 위한 국제 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理念과 体制를 달리하는 국가 와도 互惠平等의 원칙하에 문호를 상호개방하여 「世界속의 韓国으

로서 세계평화와 국제협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등이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平和統一 基本方向은 70년 8.15宣言으로 부터 72년 7.4 南北共同声明 그리고 70年6.23宣言에 이르기까지 인 관되어온 우리의 不変의 意志이며 祖国의 平和統一을 조속히 성취하기 위한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통일기반 조성책인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의해 南北間의 不信이 해소되고 유구한 民族 文化의 伝統위에 민족적 동질성이 회복되었을때 우리는 비로소 南 北韓 自由選挙를 통하여 영광된 統一民主国家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祖国의 平和的인 統一을 기어코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와 신뢰로서 南北対話에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南北間의 諸般交流中 特히 가장 초보적인 南北韓 通信交流를 위한 諸方案을 모색하여 봄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노력에 기여하고자 한다.

2. 通信交流의 範囲

南北韓間의 通信에 対한 全般的인 広範한 交流는 一短一長이 있기는 하겠으나 現時点에서 본다면 다소 기대를 결수 있는 것은 離散家族 中心의 書信交流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나 그것도 至 極히 制限된 範囲内에서이다.

그러나 南北間의 解氷ー무드 」의 程度의 多方面的 交流進行状況

如何에 따라서는 拡大 発展될 可能性이 全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点을 고려한다면 公共機関間의 通信交流와 非政治的 인 次元에서의 学者間의 書信 또는 文献의 交流가 順序가 될 것이다.

그러나 端的으로 말해서 現実的으로 個人과의 書信交流가 可能한 것은 역시 離散家族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留意해 두 어야 할것은 北韓共産党의 戦術인 것이다.

이것을 감안하여 볼때 北韓에서는 離散家族中에서도 党性이 弱한 월남자 家族 또는 拉北人士와 월남 인사를 어느정도 사실에 입각 해서 발표하느냐가 문제 된다.

이러한 제반문제를 고려한다면 通信交流의 範囲는 첫째 단계로서는 南北間에 흩어져 있는 離散家族에 대한 상호간의 通信交流가 있어야 하겠고 다음으로 공공기관과의 通信交流 및 非政治的인 学者 또는 芸術人간의 交流 및 文献交流의 순으로 진행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초기단계에서의 문제가 실현되고 나면 보다 次元높은 교 류가 가능하며 나아가서는 電報 電話의 교류도 가능성이 극히 회 박하지만 결코 불가능한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와같은 것은 南北対話의 무드가 점차 고조되었을 때 특히 적십자의 인도적인문제와 조절위에서의 경제·문화적인 다방면적 제교류가 실현 가능해감에 따라 通信交流의 제반 범주는 더욱더 拡大될 것이고 通信의 役割은 한층 점고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3. 通信交流의 意義

一般的으로 通信이란 意思를 전달하며 思想을 交換하기 위해서 마련된 모든수단을 가리켜 이를 通信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通信을 中心으로 展開되는 事業活動 즉 의사전달과 사상교환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된 人的物的 설비등의 수단을 통하여 소정의 대가를 받는 조건 내지 제도하에서 조직적이며 계속적인 활동을 일반적으로 통신사업이라 하고 있다.

人間의 思想과 의사의 전달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은 그 전달 내지 교환하는 수단의 人的 物的 설비와 기술的 方法에 따라서 이를 郵便.電信.電話로 区別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通信은 사람의 인체에 비유하면 神経으로 国家의 中枢神経으로 국가 산업동맥으로 그 중요한 역할을 점하고 있는. 것이다이와같은 通信이 南北対話를 通하여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말할것도 없지만 우선 이에 앞서 南北会談의 진전에 따른 通信交流가 갖는 意義가 무엇인가를 구멍해 보아야 하겠다.

南北의 対話가 첫째로 緊張緩和에 그 意義가 있다면 通信交流도이러한 제문제를 뒷받침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므로서 対話를 発展的으로 유도하는데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意義가 있다고 하겠 다

또한 通信交流의 意義는 1千萬離散家族의 生死 및 그 住所를 確認해 주고 상호간에 自由로운 방문을 알선하며 이들이 再結合할 수 있도록 매기체 역할을 하는데 그 意義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人道的인 문제와 더불어 南北間의 긴장을 해소하고 나아가서는 경제,문화적인 交流가 보다 다방면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진전되어 감에따라 정치.경제. 사회·군사·외교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로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하여 우리의 숙원인 平和的인 통일과업을 수행하는데 대한 하나의 성실한 매개체로서 通信交流의 보다 큰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4. 通信交流의 役割

南北間의 対話의 길이트인지 햇수로 3년이 되었다.

71년 9월 20일에 개막한 南北赤十字会談은 11個月에 결친 豫備 会談을 거쳐 72년 8월 30일 本 会談에 들어가 7차례의 本 会談 을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하었다.

한편 南北韓高位当局者의 비밀접촉이 72년 5월에 시작되어 7.4 南北共同声明이 発表되었고 이에 의거해서 南北調節委員会共同委員長 会議가 세차례 열렸으며 同年11月30日에는 同三次会議에서 南北調 節委員会가 正式 構成되어 73年3月까지 세차례의 本 会談을 가졌다. 이렇듯 南北対話는 人道的問題 解決을 위한 南北赤十字会談과 南 北関係를 改善하고 統一問題를 풀기위한 南北調節委員会 会議라는

. 이러한 南北対話률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두 「채널」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야할 문제가 南北間의 通信의 役割인 것이다.

通信은 우리의 人間의 人体에 비유하면 神経인 것이며 国家의 中枢神経하인 役割을 担当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通信의 매개체가 現代社会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스러이 再論할 必要性은 없는 것이다.

1962년 큐바사건을 계기로 美。蘇는 핵전 돌발 위험으로부터 세계를 구해야 한다는 여론에 입각 최초로 취해진 조치가 美蘇간의 직통전화 가설이었다.

케네디 美国 大統領은 하틀라인 설치에 대해「급변하는 정세에 대비한 신속하고 믿을 만한 通信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우발적인 전쟁을 막기위한 첫조치라고 밝혔던 것이다.

이러한 하틀라인은 67년6월 中東戰때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致火의 拡大를 방지하는데 큰 실효를 거두기도 했으며 그밖에도 英一蘇間•英一美間 美一西独間 中一蘇間에 하틀라인이 가설되어 있다우리도 지난 72월7월4일 発表된 歷史的인 7.4南北共同声明에서 서울一평양간 하틀라인 설치운영등에 합의도 돌발적인 軍事事故와南北間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키위해서 직통상설전화를 가설키로 合意하여 南北調節委에서 중요사항을 직접 이하틀라인을 통하여 협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南北赤会談과 調節委会議時 變方 各各 20 회선의 通信을 가설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은 南北間에 対話을 통한 의사전달의 역활을 수행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재까지의 사례로 보아서도 通信이 갖는 役割은 南北対 話을 연결하는 신경으로서 그 중요성을 다시한번 실감케 해주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通신의 役割이 南北間의 対話가 점진적으로 확대발전되어 감에 따라서 通信의 役割은 더욱 커질것이며 비단 공식적인 会談 이 아닌 순수한 민간인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対話나 個人間에 있어 어서도 점차 対話의 무드가 고조됨에 따라 通信의 역활을 더욱더 중요성을 띨 것으로 생각된다.

이 단계에 접어들면 通信交流의 役割이 구체적으로 審信交流.電報.電話의 제반 交流로서 그 실현의 가능성은 앞으로 한층 높아질것이며 이에따라 우리가 주장하는 南北間에 흩어져 있는 1千萬離散家族과의 생사 및 확인 자유로운 방문,서신거래 가족의 재결합과 단계적인 경제 문화교류의 실현도 언젠가는 이루어지리라고 본다.

第二章 東西独通信交流의 現況

1. 東西独의 通信交流

가。東西独間 通信交流의 必要性

通信交流의 必要性에 関해서 東西独은 相当히 相異한 立場을 取하고 있으니 西独의 立場과 東独의 그것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西独의 立場: 国土가 分断되어서 統一된 政府下에서 同一한 条件下에 生을 営為하지 못하는 独逸民族의 運命이지만은 独逸民族은하나라는 民族矜持의 感情을 最小限으로나마 継続維持할 수 있는 方法은 自由스러운 通信交流라고 看做한다.

人道的 見地에서 東西独間의 通信交流는 強力히 推進되어 왔다 1970年末 現在의 東独에서 西独으로 온 避難民 및 追放者数는 約 298萬名에 이르고 있다. 이들중에는 헤어진 家族이나 親戚 및 親知들에게 国境線이 아닌 境界線의 東西에서 相互通信交流함으 로서 生死 및 安否를 確認할 수가 있다. 또 通信交流에 依해서 만 独逸領土는 分断되었으나 独逸民族은 亦是 하나라는 民族感情이 継続維持될 수 있다.

또 自由로운 通信交流는 西独의 自由体制의 優越性을 両独의 国 民들이 寒感할 수 있게하는 좋은 方法이기도 하다. 그러나 西独 政府로서는 自由로운 書信交流이지만은 政治的 宣伝的인 内容은 삼 가하도록 勧誘한다. 그 理由는 東独当局의 検閲에 依한 返送 押 収 및 通信交流中断의 口実을 줄수 있기 때문이다.

東独의 立場: 廃鎖社会인 東独은 外部社会 特히 西独과의 通信 交流는 歓迎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理由로서 西独 과의 交信을 限定된 範囲內에서 許可하고 있다.

政治的인 理由로서 西独과의 交信을 꺼려하면서도 政治的인 理由로서 東西交信을 推進해 왔다. 即 東西交信은 東独은 하나의 主權国家로서의 存在를 西独政府当局이나 西独国民에게 認識시키려는 것이다. 東独은 西独政府에 対하여 東西交信에 関한 公文往来에 있어서 毎DDR의 号称을 부치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고 있다. 또한 東西交信은 東独憲法에 明示되어있는 書信의 自由가 保障되어있다는 산証拠라고 表現하려는 것이다.

政治的目的以外에 経済的인 面에서도 東独으로서는 東西交信이 必要했다. 即 東独은 西独과 1971年 経済 去来額이 48億DM에 達하는데 이는 西独의 対東独政策에 東独経済開発協力으로 取하고 있다.이는 東独에게 有利한 去来임에 틀림없으므로 西独이 顯하는 通信交流를 拒否 또는 中断할 수는 없다. 그 뿐만 아니라 東西交信은 東独의 通信事業部門에서 하나의 큰 歲入源泉이라는 것을 看過해서는 안된다.一例를 들면 1967年의 1年間에 東独은 西独에게 3千4百萬 DM(約1千萬弗)의 超過郵便料金의 支払을 要求하였다.

東独은 東西의 交信을 表面上으로는 忠実히 하게하는것 처럼 보

였으나, 西独에서 東独으로 書信去来하는것을 妨害하여서 체코等의 共産国과의 交信보다도 複雜하게 만들었다.

나。東西独間 通信交流의 範囲

敗戰独逸은 四大国占領軍이 進駐하여 그 国土가 四分割되三니東独의 蘇聯軍占領地域과 西部独逸間에는 1945年 5月8日附로 単一回線의 電話回線만을 民間用으로 남긴채 모든 電話線이 杜絶되어버렸다. 그러나 多幸히도 余他 通信手段 一般郵便物의 疎通은 큰制限을 받지 않아서,便紙(封城)葉事,印刷物,그림葉書 小包(2 kg),膳物用小包(7 kg까지는 内容物説明書 不必要,20 kg까지는 内容物説明書必要)等이 疎通되었다. 그러나 1946年6月29日에 東西의 交通이막히고 1947年6月4日에 東独에서는 通信部門에도 改革이 断行되었다.

東独에서는 1947年6月4日에 蘇聯占領軍의 法令138号에 依拠하여 "独逸経済委員会"가 設置되어 東独経済의 全部門을 把握하게되 드니 遊信部門도 指揮監督하게 되었다. 1948年11月5日에 同委員会는 500 g以上의 東独内小包(衣類,신발類,食料品)発送의 規定量複雜하게하여 制限措置를 取하니 이는 곧 東西独間의 小包郵送에도 自動的으로 큰 影響을 미치었다.

中· 東西独間 通信交流가 不断苦痛解消에 미친 影響 (通信交流에 実債)

1946年6月30日字로 蘇聯占領軍의 一方的인 東西独間通行禁止

令은 独逸国民들에게 敗戰의 代価인 国土分断의 뼈저린 試練을 안겨다 주었다. 西独駐屯軍들은 其後에도 東西通行禁止를 解除 또는 緩和를 要求했으나, 漸次 어려워가만가고 드디어는 1967年6月에 西伯林에는 20世紀의 悪名높은 伯林障壁을 構築했든 것이다. 이리하여 東西独에 居住하는 独逸国民의 相互相逢은 더욱 어려워졌고 書信이나 電話로서 生死나 安否를 確認할 수 밖에없게 되었다. 이러한 独逸国民의 不幸을 덜어주기 為한 西独政府의 努力은 中断되지않고 前進하여서 東西間의 通信交流는 큰成果를 거두었다.

1945年 5月 8 日에 東西独을 連結하는 民間用有線電話回線은 1回 線이었든것이 1968年8月8日에는 34回線으로 増加하였다. 勿論 23 年이라는 長久한 歲月이 経過하면서 이렇게 電話可能性이 増加 되어서 東西로 헤어진 親戚 親知는 制限된 奺이지만은 直接 肉声 을 들을 수 있는 기쁨을 갖게 되었다. 西独政府는 34回線의 電話回線으로 満足하지않고 継続的인 努力을 기울여 1971年12月 31 日에는 1968年度保有量의 4 倍인 134回線으로 결設하는데 成 功했고,翌年인 1972年3月3日에는 25%나 増加한 166回線을 있다. 그러나 西独에서는 最少限 1,000回線은 있 確保運営하고 어야 한다고 強調하고 있다. 또 東独內에 孤島처럼 자리잡고 西伯林은 1971年1月31日 現在 10回線의 電話回線을 通하여 는 東独의 国民과 対話할 수 있게 되었다. 또 1972年3月3日現在 에 東西独間을 連結하는 Telex도 16回線이나 架設되어서 東西交易 易의 迅速化에 큰 貢献을 하고 있다.

書信往来部門을 살펴보면 1967年의 1年동안에 西独에서 東独으로 発送한 数字는 8百萬이나 된다. 8百萬通이라는 書信発送数值는 세当히 큰것이지만은,同年의 西独内의 1日平均 3千萬通이라는 数值에 보하면 微微하기 작이없다. 如何間에 1970年 現在 西独에 居住하는 約298萬名의 避難民이 東独에 残留하고 있는 親戚이나 親知들에게 平均2.8便의 書信을 発送한 셈이다. 国内에 居住하면서 1年에 1回 또는 2回의 書信밖에 없는 例에 比較한다면은,이러한 事実은 境界線건너편의 同胞에게도 同一民族의 紐帯感情을 더욱 길러줄 수 없는 것이다. 또 東独에서 西独으로 発信또는 回答의 数值는 1967年에 約 2百萬通에.不過하다. 即 西独에서 発信한 800萬의 西分之一에 不過하다. 이러한 数值의 큰隔差는 亦是 封鎖社会에서만이 불수 있는 現象이다.

世으로 東西独間의 小包郵便量 보면 1965年과 1966年에는 小包의 內容物의 変化와 発送数值의 変化等 두가지点量 들수 있다. 從前에는 小包의 內容物이 食料品이 많이 있었다. 即 配給制度下에 있는 東独国民들이 配給糧食으로서는 日常生活의 食生活에 不足量 느꼈다는 것을 如実히 찾어볼 수 있다. 그러다가 1966年부터는 食料品以外에 嗜好品과 日常用品의 種類와 数值가 增加하는 傾向을 보이기 始作했다. 이 事実은 東独에서도 1966年부터는 基本的食糧問題는 從前보다는 改善되었으나,嗜好品(커피,茶, 호코렛트 等의 輸入品)의 一般市民供給은 如前이 不足量 느낀다는 事実量 雄弁하고 있다. 小包郵送에서 特히 注意를 喚起시키는 것은

冊子의 数가 極히 減少했다는 것이다. 많은 冊子가 東独当局에 依하여 押収되었고 또는 返送되었다. 西独에서 1965年에 東独으로 発送한 小包의 数는 無慮 5千1百60萬個이니,西独国民 約1. 人이 鉄의 帳幕속에 居住하는 同胞에게 1個의 膳物을 보낸 結果이고,東独国民은 한사람이 2個의 膳物을 받았다는 結論이 나온다. 또 小包発送의 数值를 보면 1966年에는 前年度에 比하면 約10%程度가 減少하여서 総4千7百10萬個가 発送되었다. 이러한 傾向은 勿論 東独当局者의 厳格한 検閲에 依한 統制의 所産이다.

2. 앞으로의 展望

1960年1月7日에 東独当局者는 郵便料金에 関하여 全社会主義 国家에 発送되는 20 8 까지의 外国便紙의 料金은 国内料金과 同一하다고 発表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西独에 对해서는 東西通信交流는 国際通信料金規定을 適用할 것을 強力히 要求하고 있다. 그結果 1969年12月에 東独当局은 西独政府에게 1948年부터 1968年까지의 20年間의 郵便料金 18億 DM를 清算하여 줄것을 要求했다. 이 計算은 滞納(東独의 立場에서 計算한)의 複利計算의 数値이다. 이러한 要求에 对하여 西独에서는 東西交信은 独逸内 交信이니 国際郵便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随時로 臨時 清算하곤 했는데,例을 들면 1967年度 1年分 1千6百90萬DM를 支払했다.東独의 이러한 要求는 西独에서 오는 郵便料金을 実質的으로 引上시켜 可及的 東西交信을 減少시키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東西通信交流가 政治的인 面을 떠나서 完全히 人道的 見地에서 東独이나 西独이 行해왔으나 "人道的見地"의 解釈이 東 独에서는 西独의 그것과 너무도 距離가 먼것이었다. 即 1967年 6月25日에 "東独社会主義統一党中央委員会"가 西独의 基民党과 基社党에 보낸 公開書翰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人道主義만(人道主義号 実践하려면은) 西独や

- 1)越南人民의 攻爆을 即時中止하고, 아랍国民들에 対한 侵略을 中止하여야 하며
- 2)原子武裝의 拋棄,軍備縮少 等을 通하여서 그 経費로서 国民 의 社会保障制度를 強化하여야 하며,
- 3) 西独憲法에 戒厳令에 関む 条項을 挿入함으로서 可能하게 된 独裁政治의 止揚,西独内共産党活動禁止의 止揚
- 4) 労動者들의 失業에 対한 恐怖豫防策講究,科学技術革命이 失業 을 낳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 5) 西独의 单独代表権의 拋棄

等을 実現하여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以上 5個項目에서 第 5 項은 東西独이 同時에 UN에 加入되었기 때문에 何等論할 바가 아니지만은 餘他項目은 우리陣営에서는 到底히 생각할 수 없는 풀

이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西独으로서는 人道主義에 立脚하여 東西独国民에게 分断에서 오는 苦痛을 덜어주기 為한 通信交流를 持続시키기 為해서는 従前과 같은 忍耐와 誠意를 継続 보여야 할 것이다.

第三章 南北韓 通信交流의 方法 및 利害得失

1. 書信交流의 方法 및 利害得失

가。書信交流 方法

南北間의 書信交流方法에 있어서는 첫째 南北韓 当事者끼리 直接的으로 交流하는 方法과 둘째로 제3국 즉 国際赤十字社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交流하는 方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現時点에 와서는 후자보다 前者가 더욱 効果的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効果的인 방법을 南北間 書信交流를 위해서 어떻게 운용해야만 되겠는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로 한다.

(1) 南北間 書信交流의 前提条件

南北間 書信交流의 前提条件으로서

첫째; 우리는 北韓이 戰争이후 北韓住民들을 대량적으로 정치 적장제 이주시킨 실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에 주소를 바꾼 사람들은 그전 주소와 현주소를 밝히도 록 요구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서신을 낼 수 없다. 둘째; 北韓內에서의 書信의 비밀과 서신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세째; 南北 이산가족들의 서신교류가 일정한 검열을 받아

본인에게 꼭 전달될 수 있도록 보장을 받아야 한다.

비째; 이와같은 서신으로 北韓은 정치적 이용을 하지 않으며 또 受取人에 대해 박해를 받지 않도록 対策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4가지의 전제조건이 보장되지 않는한 서신교류의 첫단계인 이산가족간의 서신교류도 결코 그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2) 書信交換 方法

상기의 전제조전이 보장되어진다면 書信交換에 있어서 南 北韓의 当事者끼리 直接的으로 双方의 실무자가 해당지역에 직접 출장하여 전달하고 돌아오는 方法을 됐하면 가장 確実性이 보장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現在의 南北韓 관계 로 보아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双方에 보내는 서신을 해당 道別 또는 지역별로 区分하여 통수를 연기하고 판문점 或은 南北韓 分界선상의 일정한 지역에서 상호확인 교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서신교환회수는 週1回든 月1回든간에 서신교환의 수량과 当時의 状況에 따라서 適宜 調整하면 될 것이다.

(3) 書信様式 및 内容問題

書信様式은 北韓側이 作乱 또는 造作하는 것을 避하기 위하여 封級보다는 一定하게 統一한 様式의 菜書를 使用하는 것 이 좋을 것이며 書信內容도 北韓이 宣伝用으로 悪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文案内容에 限界를 두도록 규제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서신교류가 있게 되면 우선 離散家族에 対한 生死 確認 여부가 가장 先次的인 문제이므로 어느 시기까지는 편지내용에 대해서 일정한 제약을 加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北韓에서도 마찬가지다. 만일 이것을 자유롭게 하게 되며는 北韓側은 그저 시작부터 끝까지 그들이 사는 곳이 地上 天国이요, 南韓에 살고 있는 国民에게는 얼마나 苦生이 많느냐는 식으로 그들의 공산당 특유의 상투적인 말을 쓸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書信様式에 대해서는 封縅아닌 葉書로 일정한 규격으로 통일하여 하는 것이 좋겠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北韓側의 선전을 봉쇄하기 위해서 우선 이산가족의 생사에 대한 확인 안부정도로 제약하는 것이 先次的인 문제이다.

(4) 書信의 伝達保障 또는 確認問題

南北間에 交流되는 書信이 受信人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 3 자인 국제적십자사의 協調를 받 거나 또는 双方의 代表가 該当地域에 直接同行해서 伝達하는 方法도 있으나 이것은 十中八九는 北韓側이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이것은 우리側이 전략적으로 고려해 볼 문제인 것이며 比較的 可能性이 있는 方法으로서는 双方이 다같이 往復

열서를 사용해서 보낸 편지에 対해서는 반드시 받은 측이 自筆로 回答을 보내도록 하되 回答란에는 本人의 回信이 기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事由를 責任있는 当局이 明記하여 돌려 보내도록 하고 또한 보낸 편지에 대해서는 双方이 다같이 放送을 이용하거나 또는 상호 납득이 잘수 있는 방법으로 편지통수와 개개인의 이름을 発表하도록 하는 方法을 択하면 比較的 実効性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書信의 交換場所問題

書信을 交換하기 為한 場所問題는 우리나 北韓側이 共히 수락할 수 있는 場所라야 하는데 이러한 場所問題는 앞으로 南北 双方間의 書信交流에 대한 協定이 체결되면 자연히 교환강소가 결정되라고 생각이 되나 이에 앞서 장소문제를 論議한다면 板門店이 가장 合当한 장소라고 본다.

왜냐하면 아직도 南北韓의 対話는 初期단계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南北赤十字間의 사업이나 南北組織委員会間의 제반사업이 순조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또한 적십자회담이나 조절위회담이 진행된다하드라도 双方間에 있어 여전이 조성될때 까지는 板門店이 서신교환장소로서는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곳에서 서신의 교환이 이루어 진다면 우리측이 以北으로 간다던가 또는 以北에서 우리쪽으로 온다던가 하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方法은 南北赤十字会談이나 南北調節委員会会 議가 개최될 때마다 代表団들이 以北이나 우리나라로 올때 直接 회담장소까지 와서 交換하는 方法이다.

勿論 이것은 離散家族의 生死 確認을 위한 가장 초기단계로서 한번 시도하여 볼만한 것이다.

지난 南北赤会談이나 南北調節委会 護에 국히 적은 규모이진 하지만 신문이나 기타 双方問의 会談에 必要한 자료들을 행당에 묶어 公式的으로 板門店을 통하여 相互間에 交換한 바가 있다.

(6) 交流時의 郵票使用 問題

南北韓 双方間의 書信交流時 郵票를 使用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리고 使用한다면 共同郵票를 使用할 것인가 그렇치 않으면 各己의 郵票를 使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또한 代金決済 方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면 세계만국우편 조약에는 通常郵便物은 자기나라에서 接受한 것이 바로 그 나라의 収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即 万国郵便物協定에 의하면 우편은 보내는 측의 국가우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収入은 該当国의 国家収入으로 잡는 것이 通例이긴 하지만 南北韓의 경우는 이것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北韓은 아직까지도 万国郵便物協定에 加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双方이 各者의 郵票를 使用하게 되면 郵票의 印刷術, 디자인, 紙質등으로 보아서는 우리측이 유리한 선전적인 効果를 얻을 수 있지만 그 反面 北韓은 이를 政治的으로 利用할

소지가 充分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北韓当局의 政治的인 宣伝이라 함은 郵票에 金日成의 사진이나 北韓의 国号를 挿入할 것이 당연하므로 우리나라측으로 보아서는 난처한 입장에 부닥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国家承認에는 明示的인 承認과 默示的인 承認이 있는데 国另가 記入된 郵票使用 亦是 默示的인 国家承認의 범주에 속하게 될 것이므로 南北韓이 双方 自己의 郵票를 使用하는 것은 不可能하다고 보겠다.

그러므로 現実的으로 가장 無難한 方法은 南北이 相互間에 郵票 를 使用하지 않고 요금별납이나 또는 無料로 하던가 기타 다른 方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留意해야 할것은 双方 共히 書信을 보내는데. 있어서 住所란에 国名을 쓰지 않고 다만 市道单位 以下만 記入하 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郵票도 使用하지 않고 또한 国名도 記入하지 아니할 경우에 있어서 郵票를 부치지 않았다 해서 日附印도 안찍고 그대로 보낸다면 이 書信이 大韓民国에서 온 것인지 北韓에서 만들어 낸 것인지 区別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郵票를 使用하지 않을 때에는 일단 郵便物로서의 完全한 形態를 갖추어서 接受하여 우편요금의 결제없이 주고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

(7) 書信交流時의 検閲方法

南北 双方間 書信을 交換할 때에는 반드시 검열기준 방법

´을 세워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郵票나 또는 편지지나 봉투등에다 暗号를 쓴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때 北韓側이 이런 것을 충분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열기준을 규정하는 것도 좋은 것이다.

우리가 이와같은 검열방법을 내세운다면 北韓側은 당연히 이를 거부할 것은 분명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書信交流時에 団体나 個人으로부터 쓰여진 書信을 大韓民国으로 発送하기 이전에 北韓共産党의 철저한 검열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書信의 내용들이 한결같이 北韓을 선전하고 大韓民国에 있는 離散家族들에 대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는 등의 문안이라 검열이 뭐가 必要하겠느냐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측의 서신이 北韓에 発送될시는 그들은 검열기준등에는 아랑곳 없이 労動党이나 社会安全部 검열부에서 厳格한 검열을 거친 다음에 그 내용상에 있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면이 있다면 아예 受信人에게도 보내주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트집잡아서 受信人이나 또는 大韓民国에 어떠한 비난도 서슴치 않을 것이고 受信人에게는 生活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나. 書信交流時의 利害損失

(1) 否定的 인 側面

北韓은 64年1月23日字 労動新聞 社説을 通하여 「書信去来로부터 始作해서 南北間에 가로놓인 장벽을 허물어 버리자」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그들의 이러한 수작은 書信去来로부터 시작해서 南北間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그네들의 共産体制를 大韓民国에 까지 밀고 내려가자는 것이었다.

北韓이 南北間의 書信交流문제부터 이렇듯 적극적으로 내세웠던 것은 그것이 分断된 南北韓同胞의 소박한 심정에 가장 절실한 反応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며 또한 大韓民国에서 상당한 호응을 사고 있다고 타산했기 때문인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것을 간단히 생각한다면 分断된 南北을 가냘프 게나마 이어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걸로 생각되며 또한 가장 절실한 바램으로 생각되지만 그것이 그렇치 못한데에 우리民族의 비극의 심각성이 숨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도 우리들의 노력과 성실성있는 인내로서 지난 70년8월 15일 朴大統領의 평화통일 原則의 재확인에 따라 이에 대한 최초로 맺어진 결실이 바로 71년8월 12일 우리大韓 赤十字社가 提議한 南北赤十字会談인 것이다。

지난 2년간 南北赤会談은 25次의 予備会談과 6次의 本会談을 이미 進行한바 있으나 아직도 合意된 議題의 첫번째 의제인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친척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에 대해서 조차도 뚜렷한 진전이 이루어 지지 않 은채 현재 北韓측의 거부로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이러한 南北間의 会談이 순조로히 진행될 것을 전제로 내세우고 5개항으로된 南北赤会談의 議題가 진전되어 나갈 것을 감안하여 의제 제3항인 「南北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자유로운 書信去来를 실시하는 문제」에 대한 것을 검토하되 특히 否定的인 측면을 몇가지 들어 보고자 한다.

첫째로 現在의 南北関係의 진천상황으로 보아 書信交流가 된다 하드라도 離産家族에 대한 住所가 明確치 않아 편지를 낸다해도 받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北韓에 있는 잔류가족이 월남가족의 주소도 알기 어려울 것이지만 (우리측이 월남가족에 대한 주소를 알려준다해도 北韓 半局이 그것을 北韓 잔류가족에게 그들에게 큰 利益이 오지 않는 한 알려주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이것을 対南戦術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월남가족이 北韓에 있는 가족의 주소를 알길이란 더욱 막연하다.

그러한 理由는 北韓은 南労党을 비롯한 他派에 대한 거듭되는 扇清을 通하여 特히 1958年부터 60년까지 2년간에 결친 소위 「中央党集中指導事業」이라는 名目의 全住民審判工作을 通해서 全 北韓住民의 3分의1을 敵対性分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粛清하였던 것이다. 이들 粛清者들中에서 가장 가벼운 처벌이 평양 또는 開城市의 50 Km이내 근방에서는 살 수 없다는 이른바 그들의 內閣決定 140 号에 의한 強制移住였는데 越南同胞의 가족과 또한 전멸하다시되된 南 労党員의 家族들이 거의 모두다 이숙에 속해 있는 것이다.

南韓에서 억지로 끌려갔다가 거의 모조리 「清掃」당한 납치 人士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니 大韓民国에 있는 雜散家族이 北韓에 있는 가족에게 서신을 보낸다고 해도 지금 以前 住所에 그냥 그대로 사는 사람은 거의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政権」樹立 이후 行政区域을 마구 개편 해 놓았으므로 北韓內에서 조차도 서로 住所를 몰라 緊要한 서 신연락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줄 안다.

하물며 北韓內에서도 그러한데 25여년간이나 전혀 소식이 단절된 状態에서 지내온 大韓民国內의 離散家族이 서신을 낸다해도 적십자회담 의제에 包含된 제반문제가 순조로히 타결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보겠다.

둘째로 비록 北韓에 있는 家族의 生死 및 住所確認이 되어 우리측이 서신을 보낸다 해도 그中에서 실제로 本人에게 배달되 는 것이 과연 몇 할이나 될지 극히 의심스러운 것이다.

共産社会하고도 北韓의 郵便物 검열제도란 유명한 것이다. 書信의 内容이 단순한 雜散家族들의 生死 및 確認 安否라 해 도 北韓当局은 이를 제멋대로 해석 그것을 전달해 주기는 고사하고 発信人 受信人을 모두 괴롭힐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北韓住民들은 北韓內에서 조차 비록 住所를 아 는 경우라 해도 피차 書信往来를 되도록 삼가는 것이다.

그래도 할 수 없는 경우에 편지를 하드라도 거의 대부분이 對綴아닌 엽서로서 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書信들이 검열을 거쳐 봉투에 적힌 住所 로 가서도 간단히 배달되는 것은 아니다.

北韓은 오늘날까지 每家庭마다 찾아다니며 편지를 배달하는 配 遠夫가 없다.

現在 우편통신원이라는 것이 있긴하나 가정에까지 배달은 하지 않고 직장으로 가는 우편물을 한뭉치로 갖다 던져버리는 것은 勿論이거니와 個人집으로 가는 우편물은 그가 属한 「人民班)班 長에게 전달되도록 되어 있다.

이와같이 배달된 우편물을 人民班長은 班長으로서 社会団体의 各長은 長으로서 그 우편물을 살펴보게 마련인 것이다.

그들은 自己責任下에 있는 사람들의 「人的事項」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라는 명목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2 중3 중의 검열을 통하여 그 모든 내용이 그들의 対南戰術에 정보자료가 되고 또한 個人감시의 미끼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세째로 書信이 本人에게 배달되지 않고 이것이 그들의 정보

자료로서 주어져 対南宣伝用으로 利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北韓의 「社会安全部」 검열부에서는 우리측 書信이 오는대로 검열하여 그중에서 정보자료로서 취집할 수 있는 것을 취집하고 선전상 그들에게 불리한 것은 어떠한 理由를 부쳐서라도 이를 물수할 것이며 그 나머지 그들에게 선전상으로 유리한 것만을 배달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측이 보낸 우편물의 수에서 얼마나 베달될 수 있을 것인가를 짐작이 잘 수 있는데 이는 과거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北送교포와 日本에 남아 있는 그 가족들과의 서신 거래에서도 이미 실증된 것이다.

이미 日本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매스콤을 통해서나 北韓을 방 문한 조총련간부들로부터도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다.

北韓 「社会安全部」검열부의 이와같은 사실을 안 교포들은 검열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서로 짜놓은 暗号나 은어를 사용하여보내는 데도 本人에게 전달되는 것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北韓을 낙원이라고 찾아간 北送교포와 또 그들을 환송한 제일 교포사이 서신조차 이런형편인데 우리의 書信이 北韓에 있는 家 族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은 매우 희박한 것이다.

勿論 北韓으로 보내지는 편지만이 아니라 北韓에서 나오는 것 도 그들은 마음대로 조작해 내거나 아니면 아예 보내지도 않고 검열부자체에서 압수해 버리는 경우도 허다할 것이다.

이렇듯 北韓은 私信에 대해서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北韓当局의 처사로 생각할때 南北적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것이라해도 서신을 보낸다면 그것은 그들의 정보자로나 충족 시켜 줄 뿐이라는 것이다。

네째로 그러한 페단은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北韓에서 大韓民国으로 보내는 편지는 비록 本人이 쓴다해도 그것은 北韓当局이 시키는 대로의 거짓선전이 강조되지 않고서는 도중에서 압수당할 뿐아니라 그런 서신을 낸 사람은 차후 공산 당식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反面 大韓民国에서 北韓으로 가는 서신속에 万一 여기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잘 살고 있다는 정도의 사실을 한줄만 써도 그것이 그들에게서 차단될 것은 뻔한 것이려니와 受信人도自己도 모르는 사이에 애매한 일로 의심과 감시를 받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北韓에서는 누구나를 莫論하고 大韓民国에 있는 자기육친 친척은 勿論 親知 기타 연고자까지를 生死에 不拘하고 전부 報告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을수록 박해와 의심과 不信을 받는 만큼 누구나 되도록 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려 한다.

그런데 이제 南北赤十字会談으로 哲信交流가 進行되면 만일 申告한 以外의 사람으로부터 不意의 서신이 전해진다면 그는 党에 거짓말을 하고 사실을 숨겼다고 벼락이 내릴 것이요 나 아가서는 欺清의 대상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러한 일이 発生했을때는 北韓에 있는 잔류가족에게 재화를 뿌리는 결과가 된다.

앞으로 南北間書信交流가 시작되면 北韓의 많은 사람들이 大韓 民国에서 오는 서신을 심중으로 받고 싶어할 것이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申告層以外의 사람에게서 서신이 날라올까 전 전긍긍할 것이다.

그것은 잘못하면 숙청은 말할것도 없으며 지나치면 [축음의 독촉장]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여섯째로 이러한 南北韓의 書信去来가 北韓의 対南工作에 각종 의 편의와 특히 연락루트를 안성맞춤으로 제공해 주게 되리라는 것도 否定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大韓民国에 居住하는 離散家族이나 연고자들에게 새로운 安否와 所在를 밝혀줌으로써 그들에게 個別的인 宣伝대상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対南工作의 포섭대상을 豊富히 제공해 주고 따라서 그를 대상으로 하는 対南工作員이 보다 많이 파견되어 大韓民国에서 幸福하게 살고 있는 그 연고자들에게 뜻하지 않은 「검은 그림자」를 찾아들게 하리라는 사실이다.

일곱째로 南北間의 書信交流가 된다면 「모든 것이 결국은 北韓 자기네들 주장대로 되고 大韓民国은 北韓을 따라오지 않는가」하면서 또한 合法的인 大韓民国과 그네들이 대등한 입장에 서게 되었음을 対內外에 적극 선전할 것이다.

이러한 否定的인 측면 以外에도 얼마든지 나열해 볼 수 있으

나 여기에서는 이것으로 몇가지의 예를 들어 기술해 보았다.

(2)・肯定的인 側面

南北間의 喜信交流에 있어 우리에게는 위와같은 否定的인面만이 있는 것이 아니며 肯定的인 측면도 있는 것이다. 허나이와같은 肯定的인 측면은 否定的인 측면에 비유해 보면 너무나미약하다는 것이다。

첫째로 南北이 分断된 이래 헤어진 1천만離散家族의 상호간 生死 및 確認 安否만이라도 시원히 해보고 싶은 절실한 念願을 일시적이나마 풀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후에 실제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간에 그것은 우선 생각치 않고 말이다.

둘째로 歴史的인 南北赤会談이나 7.4 共同声明 그리고 南北調節 委会議가 우리의 「이니시아티브」로 열렸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北에 있는 가족에게 보다 좋은 大韓民国의 우월성을 넌즈시 과시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폐쇄적인 北韓社会에 自由의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세째로 南北対話 以前까지만 하더라도 北韓측의 제의를 거부하던 우리의 입장을 이 기회를 통해서 국내외의 與論을 우리측에

유리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서신교류를 통해서 北韓의 본심이 얼마나 흉악하 다는 것을 실증해 주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네째로 書信交流의 대상을 우선 서울을 비롯한 都心地의 中産 -層 以上의 階層들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외 냐하면 그 대상을 먼저 선정하는 것은 北韓의 음흉한 계략을 충분히 분석 또는 평가가 가능한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유혹에도 현혹당하질 않는 보다 생활적으로 건전하고 민주주의 사고방식이 투철한 그런 부류屆을 선정해서 한다면 우리가 得이될 것이다.

다섯째 우리축이 6.25 当時 越北者의 명단을 노출시켜 北韓 간첩의 남파기도를 좌절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北韓축으로 볼때는 大韓民国에 대한 対南工作포기를 의미하는 결과가 된다。 北韓은 이미 남노당원에 대해서는 또한 越北납치한 사람에 대해선 거의 총살 아니면 숙청을 해버렸다.

2. 南北間 電報交流 問題

南北韓間에 있어서 電報의 交流는 텔레타이프에 의한 정부레델이나 각 신문, 통신사의 기사송고 및 공식문건 이외에 南北間과 흩어진 1천만 이산가족을 투速히 찾기 위한것과 나아가서 政治, 経済, 社会, 軍事의 제분야가 다방면적으로 交流가 되어질 때 서신이나 電話를 하는 方式의 이러한 交流를 생각할 수 있다.

電報의 상호 交流는 最初의 단계로서 北韓에 있는 家族의 生死 및 確認 安否의 書信交流가 있는 다음에 상대방의 住所 또는 受 信人이 정확히 밝혀신 後에 비로소 可能한 것이다.

南北龍의 電報交流가 이루어지기 까지는 위에서 말한 것 뿐 아니라 南北間의 電信에 관한 상호간의 協定이 우선 先行되어야 하고 이것이 된후에는 지금까지 分断状態하에서 끊어진 전신路線을 연결하는 문제가 있게될 것이고 이러한 제반문제가 해결된 연후에는 南北間의 双方 실무자들끼리 電報交流에 구체적인 方法의 論談가 있어야 한다.

電報는 書信과는 달리 상대방에게 빠른 시간대에 발신인의 의사를 간단명료하게 전하는 것이므로 南北關係가 점차 좋은 方向으로 改善되어 通信交流가 先行된다면 電報交流 또한 그 利用者가 많을 것으로 본다.

電報交流가 実施된다면 우리側으로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利点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첫째, 電報는 內容에 있어 극히 제한이 되어 있으므로 北韓当 局의 特別한 검열을 받을 必要가없이 受信人에게 전달 될수 있다.

둘째. 전보는 받을 상대방과 짜고 암호로서 의견교환이 可能하다.

셋째, 복잡한 절차나 검열없이 급한 문제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다,

넷째, 北韓내의 전신시설 및 그 기술 수준여하를 예측할 수 있다.

다섯째, 특히 電報는 서신이나 전화에서 볼수 있는 취약점이 없... 으므로 그네들의 정보자료로서 이용이 不可能하며 또한 北韓側의 對南工作에 이용당할 念慮가 없다.

여섯째, 전보는 우리가 北韓으로 보낼때는 発信人 住所를 明記하지 않으므로 北韓側이 우리측에 보낸 発信人의 住所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전보를 이용할때는 이와같은 이점이 있으나 이에 비해 단점도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로 전보는 글자수에 따라서 発信人의 부담이 늘고 北韓같은 社会에서는 전달이 不可能 하다.

왜냐하면 전보는 그 내다수의 이용자가 시각을 다투는 급한문제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므로 우리 社会와는 달리 그들 社会에서는 전보배달원이 따로 없고 통신원(배달부)이 서신과 같

이 배달하는 것이 통례이다.

둘째로 서신취급과 마찬가지로 수신인과 그 任所를 알 수 있 게끔 되어 있기때문에 北韓측이 이를 일일히 체크해 두었다가 수신인의 동태를 감시 감독함으로서 보다 많은 제약을 받을 구 설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결과가 된다.

셋째, 서신과같이 상대방에게 충분한 내용을 쓸 수 없기때문에 상호간 아쉬운 감이있다.

그 이외에도 南北間 電報의 交流時 많은 장단점이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우선 극히 보편적인 것만을 몇가지 들어보았다.

앞으로 위에서 기술한 제내용이외에도 南北對話가 무르익어 평화적인 통일을 향하여 계속 전진한다면 보다 이러한 문제는 가속도적으로 증가될 것임이 틀림없다고 보겠다.

3. 電話交流時의 問題

가 하틀라인

南北韓 以方은 南北赤十字会談이 열린지 근 1여년만에 평양화 서울에서 비밀리에 北韓과의 고위정치협상을 갖고 조국통일의 원칙 과 긴장완화등 7개항에 달하는 합의에 도달 72년 7월 4일 오전 10시에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歷史的인 7.4南北共同声 병이 発表되었다.

共同声明은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기약하고 이를 위해 민

즉적 대단결을 도모한다는 조국통일원칙과 南北조절위 구성 및 서울-평양간 직통전화 (하틀라인) 의 설치운영등에 台灣함으로써 돌발적인 군사 사고를 방지하고 南北間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해서 서울-평양간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합의 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서울-평양간 직통전화 설치운용에 대한 合意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南北間 直通電話架設에 關む 合意書。

1. 直通電話의 設置目的

祖国의 平和統一을 自主的으로 実現하기 위한 課業과 其他 南北間에 提起되는 問題 및 不意의 事態에 對備하는 問題를 直接 신속 正確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평양간 直通電話(以下 直通電話라고 함)를 設置 運用한다.

2 直通電話器 設置場所

直通電話器는 서울에는 이후탁中央情報部長의 事務室 그리고 평양에는 金英柱組織指導部長의 事務室에 各各 設置한다.

3. 運用時間

直通電話는 日曜日과 公休日을 除外하고 每日 9時부터 12時까지 16時부터 20時까지의 사이에 運用하며 双方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경우에는 以上에 指定된 時間과 날짜에 구애됨이 없이 事前

에 날짜와 時間을 設定하여 運用한다.

4. 通話者

直通電話의 通話者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로 한다.

서울에는 이후락中央情報部長과 그가 指名한 3名으로 하며 평양에서는 金英柱組織指導部長과 그가 指名한 3名으로 한다.

5. 試験通話

直通電話의 異状有無를 確認하기 위하여 第三項에 指定된 날의 10 時에 試験通話을 한다.

6. 故障修理

直遮電話에 異状이 있을때는 板門店常設連絡事務所是 通하여 이를 通報하고 双方은 각기 自己 管割地域을 責任 지고 補修하며 板門店 共同管備区域内의 故障은 兩側이 共同으로 修理한다・

7. 秘密保障

双方은 通話内容의 秘密을 厳格히 保障한다.

8. 修正 또는 補充

本台意書의 内容을 修正 또는 補充할 必要가 있을 境遇에는 及 方의 台意에 依해서만 할 수 있다.

9. 有効期間

本台意書는 서로 署名하여 交換한 때로부터 発効하며 双方의 台교 意에 따라 廃棄하기 前에는 계속 有効하다.

서울 中央情報部長 이후락

평양 組織指導部長 金英柱 72.7.4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서울과 평양간에 하틀라인(常設直通電話)이 設置되었는바 이것은 国際的으로 이미 7年前 美·소間에 設置된 것을 효시로 현재 세계여러 국가들간에 設置運用되고 있는 것이다.

이 電話의 主用途는 비상시 故對国指導者 사이의 긴급대화를 통해 우발적인 戦争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電話는 그밖의 目的에도 자주 使用되고 있다.

서울-평양간의 직통전화는 [돌발적 軍事事故를 방지하고 南北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성 있게 正確히 처리하기 위 해]설치되는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하들라인의 효시격인 미·소간의 直通電話는 「사고 誤算 또는 通信의 失敗로 인한 戦争의 危険性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用途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63年 6月 18개국 「제네비」会議에 参席한 미·소代表사이에 조인된 「直通通信 連絡線의 設置에 관한 協定」이 조인됨으로써 設置된 것이다.

1962年 「큐바」의 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誤算에 의한 미·소 간의 核戰爭 돌발위험으로부터 세계를 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그러한 여론에 입각한 첫번째의 조치가 하틀라인 가설이었다.

当時 美国의 「케네디」大統領은 하들라인 設置에 덧붙여 「변화 무상한 이 時代에 있어서는 비상시에 대비한 신속하고 믿을만한 통신이 必要하다」고 말하고 그것은 우발戦争을 막기위한 첫조치라 과 밝혔다.

서울 - 평양간의 直通電話는 기술적인 내용면에서 外国의 하틀라인 과 조금 다른 것이다.

현재 미·소간의 하틀라인은 텔레타이프 回線과 無線電話의 二 重으로 되어있다.

이, 라인은 67年 6月의 中東戦争時 빈번히 사용되어 戰火의 拡大를 미연에 방지하는 실효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밖에 67年 2月에는 「런던」과 「모스크바」간에 같은 형태 의 하틀라인이 설치되었으며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同盟国間에 설치된 직통전화도 . 하틀라인으로 불리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워싱톤-런던 워싱톤-본 ,모스크바-북경간의 직통전화가 있다.

그리고 워싱톤-東京間의 직통전화처럼 気象情報交換을 위한 特殊 . 한 하틀라이노 있는 것이다.

서울 - 평양간의 이와같은 하틀라인 이외에도 南北韓赤十字会談과 南北調節姿員会会該를 為해서 南北율 연결하는 유선회선수는 20개 가 있으며 이가운데는 신문과 통신용 2회선과 방송용 1회선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 남산의 대한적십자사 2층에 있는 프레스센터와 평양의 숙소 및 회담장소를 각각 연결하고 있는 이회선을 통하여 기사를 보내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프레스센터는 평양에서 들어온 기사를 각신문사 방송국 통신사간에 설치된 직통전화를 이용 각회사에

송고하고 있는 것이다.

나. 個人間의 通話 문제

이미 南北双方間은 南北調節委나 南北赤十字会談을 위한 20회선의 전화를 가설해 놓고 있다.

그러나 大韓民国에 살고있는 離散家族이 北韓에 잔류해 있는 가족에게 直接 電話로서 목소리를 들으면서 대화를 나누기에는 현재의 南北對話의 진전상항으로보아 시기상조인 것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지만 南北間의 관계가 현재대로 지속될 수는 결코 없을 전대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이를 필연코 성취시킬 수 있으리라는 確信을 갖고 이에대한 對策을 세워야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南北對話를 위한 두개의 [채널]을 제외하고는 韓半島인 南과北에서 電話로서 離散家族間에 對話가 이루어진 예는 없으나 제3국인 日本같은데서 이것이 이루어진 예가 있다.

1964年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세계올림픽에서 北韓 단거리 육 상선수인 신금단(대회는 불출전)이 제3국의 수선과 우리 政府当 局의 노력으로 大韓民国에 살고 있는 그의 오빠와 전화로서 그 리고 이국땅에서의 극적인 해후가 있은 예를 볼 수 있는 것이 다.

그러나 南北對話가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南北間의 電話通話 가 어느정도 可能性이 있겠는가는 及方의 노력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双方의 노력과 합의에 의해서 離散家族이나 더 나아가서 研究機

關 및 学術団体등과의 다방면적 교류가 있을시에 우리들의 우월 성을 충분히 과시 할 수 있는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허지만 電話의 교류문제는 정부 및 공식적인 단체들간의 교류 를 제외한다면 개인간의 통화는 通信交流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난제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나하면 北韓에서의 전화가설은 반드시 党의 방침아래 기관· 단체 기업소 공장 그리고 군당위원장급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화가 가설되어 있고 일반 任民에게는 일체 私用電話를 不許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北韓이 가지고 있는 전화가설 수용능력은 약20 여만대로 추산되고 있다. 그네들의 전화시설은 日政府에 설치한 기존시설을 확장하여 소련, 中共, 東独, 항가리, 체코, 日本등에서 기계를 수입해 운용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조금 전에도 기술한 비 있거니와 현재 北韓은 전화가설을 행정기관 기업소 공장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사용전화는 인정치 않고 있기때문에 道市 郡党委員長이나 人民委員長,內務者長以上의 특수층에만 가정용 전화를 가지고 있을 뿐이고 공중전화라는 우체국 백화점 호텔등에 설치되어 있다.

이와같은 北韓의 전화수용능력이나 가설허가 대상을 고려해 볼 때 南北間에 전화 교류가 된다해도 그 대상이 없어 개인간에는 그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개인간에 있어서 전화를 하고 싶어도 이들 이산가족들(北韓잔류 가족)은 北韓의 권력계층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생활에 있어서도 최 저생활을 영위할 것이므로 이들이 과연 전화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北韓 정치체제나 社会 구조가 비뀌지 않는한 불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전화는 상대방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으나 유선으로된 전화는 보안성이 결여되어 있기때문에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서로 토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전화는 個人間에 있어서는 北韓의 정치체제 또는 사회구조가 변질되지 않는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交流는 먼훗날에 생각할 문제이며 현재로서는 交流가 가 능하다 해도 우리측에 득보다는 손실이 막심하리라고 본다.

第四章 南北接触의 進展度에 따른 通信交流의 拡大方向

1. 雜散家族事業의 進展度의 通信交流

가。제1단계: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친척들의 住所와 生 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問題」

現在 南北赤十字会談은 第20次豫備会談에서 本会談의 議題가 確定되고 7次의 本会談을 진행하는 동안 議題 第1項인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친척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問題를 놓고 거의 진전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議題 第1項은 離散家族의 가장 안타까운 悲願인 同時에 相逢 書信去来,離散家族의 再結合,其他 人道的 問題 해결의 기초가 되 는 것이다。

大韓赤十字社는 議題 第1項을 오르지 赤十字原則과 同胞變에 依해서 合意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으며 赤十字의 일반관례와 우리나라의 特殊性을 참작한 제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即 變方의 赤十字社는 離散家族 및 친척의 申請을 所定書式으로 相対方의 赤十字社에 遊報하면 신축하게 調査하여 回報하여야 하며 이 事業을 끝까지 赤十字의 主管과 責任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赤十字社側은 南韓은 法律的,社会的 障害가 먼저 除

去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条件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主張은 南北赤十字会談에 政治的 問題를 提起하는 것으로 赤十字의 所管事項이 아니며 따라서 赤十字会談의 論題가 될수 없 는 것이다.

北韓地域에서 人權이 유린되고 特히 공산주의와 北韓의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이 무사하지 못하다는 것은 周知의 事実임에도 不拘 하고 大韓赤十字社 代表団이 이問題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南北赤十字事業은 오로지 赤十字 原則에 의해서 실시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北韓은 南北関係의 現在여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대방의 법질서 및 社会体制에 関한 問題를 解決条件으로 내세우는 것은 필경南北間의 人道的 問題를 풀어나가지 않겠다는 態度로 解釈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現在의 状況을 고려하지 않고 南北赤十字会談이 점진적으로 성공리에 타결될 것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通信交流의 방안을 検討해 보기로 한다.

앞에서도 이미 言及한바와 같이 議題 第1項인 生死 및 住所確認問題에서는 진정한 赤十字精神에 입자해서 離散家族 및 친척의申請을 所定書式으로 相対方의 赤十字社에 通報하면 신속히 조사하여 이를 회보해 주어야 한다.

민일 회보가 오면 会社事務局은 離散家族들에게 이를 즉시 通報 해 주어야 하고 通報를 받은 離散家族들은 北韓에 있는 잔류家族 들의 생사여부 및 住所를 알수 있게 될 것이다.

나. 제 2 단계: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과 친척간에 ,自由로운 방문 상봉하는 問題」

제 1 단계에서 離散家族의 生死 및 住所確認에 따라 극히 초보적인 問題가 이루어지면 제 2 단계로서 自由방문과 상봉의 문제가 제 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自由방문과 상봉은 現在로선 거의 불가능하며 만약 된다하더라도 많은 變方間의 제약요소가 따라야될 것이다.

허지만 赤十字의 人道的인 精神에 慶方이 따른다면 不可能한것만 도 아니다.

이에따라 通信交流도 첫단계보다도 좀 幅넓게 交流될 수 있을 것이며 離散家族은 勿論 친척까지도 通信交流가 可能할 것이다.

그렇지만 可能性이 있는 以上으로 어려운 난관이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제2단계에서의 通信交流는 퍽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다. 제 3 단계: 「南北으로 풀어진 家族들과 친척들의 自由로운 瞽信去来를 実施하는 問題 |

의제 第1,2項이 성공리에 타결되고 그에 따른 通信交流도 要方間의 주어진 여건아래서 활용해 간다면 제3단계인 書信去来問題에 대해서는 보다 幅넓게 相互 積極性을 띨수 있을것으로 展望된다.

그러나 누차 앞에서도 言及한바 있거니와 이러한 여전이 變方間에 合意되는 전제하에서 出発하다면 第3項인 書信去来는 제한된

範囲기는 하지만 自由로히 오고 갈 수 있을 것으로 展望된다. 라. 제 4 단계: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의 自由意思에 의한 再結 合 問題」

의제 第4項인 家族의 再結合問題는 특히 家族들의 自由意思에 의한 再結合은 第2項인 자유방문과 함께 가장 어려운 問題로 곱히고 / 있는 것이다.

우리축으로 볼때는 自由意思에 의한 家族의 再結合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나 과연 北韓側이 이러한것을 歓迎할 것인가는 의문이되지 않을 수 없다.

마. 제 5 단계: 「其他 人道的으로 解決할 問題」

이 問題에 対해서도 特定한 事実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 므로 비교적 變方間의 타결이 용이하리라고 본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유사한 제문제에 대해서는 의제어느항 보다도 어렵지 않게 變方間에 처리되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南北赤十字会談은 北韓側이 순수한 赤十字의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会談에 임하지 않는한 결코 이러한 問題가 타결될 可能性 희박하다.

勿論 部分的으로는 特히 暫信去来같은 問題 상봉군제등은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問題도 우리의 인내와 끈기있는 성실성이 수반되 지 않는한 어려운 問題다.

따라서 南北間의 通信交流의 拡大방안도 남북적회담의 성과적인

진전에 따라 拡大 発展될 수 있는 것이긴 하나 現在로서 이렇다할 대안을 내놓기에는 어려운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

南北調節委員会 事業에서는 南北関係를 단계적으로 改善함으로써 統一問題까지 풀자는 우리측의 提案이 北韓側으로부터 拒否되어 実 質的인 進展을 보지못하고 있다.

73年3月14日부터 15日까지 開催되었던 南北調節委員会 第2次 会議에서 우리측은 調節委員会안에 経済 및 社会·文化分科委員会를 구성하고 이分野의 交流를 먼저 실시하자고 提議한데 대해서 北韓 예은 南北間의 軍縮,駐韓外国軍의 철수등이 先決条件이라고 응수했으며 分科委員会도 政治,軍事,外交를 包含한 다섯개를 함께 設置하지 않으면 아된다고 하여 우리측 提議를 反対했던 것이다.

南北調節委員会 共同委員長 第2次会議의 合意書에 南北調節委員会 안에 政治, 軍事, 外交, 経済, 文化分科委員会를 둔다고 하고 「各分科委員会는 南北調節委員会 事業이 진척되는데 따라 設置하며 그 기능과 稱成은 變方의 合意에 의해 따로 規定한다」고 하였거니와 우리측은 南北関係의 現況에 비추어 経済 및 社会 文化分野의 交流를 먼저 실시하고 漸次 다른 分野로 拡大해 나가는 것이 南北関係 吹善의 가장 合理的이고 現実的인 接近方法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것은 南北関係의 단계적 개선의 개념이다. 그것은 南北間의 問題를 풀기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고 그 実績. 에 기초해서 南北의 接触과 交流의 幅을 넓혀 나가며 궁극적으로 는 統一問題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南北間의 理念과 思想 및 体制가 의연 対立되고 있으며 統一에 대한 価値観도 相反되고 있는 오늘날의 南北関係를 냉칠하게 관찰 할때 統一問題를 즉각적으로 解決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며 또 相互의 理念과 体制에 걸리는 問題를 解決과제로 삼는다고 해서 그것이 풀릴수 없으며 오히려 긴장 재연의 요인이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北韓측의 軍事問題 先決論은 南北関係의 여건을 庭外視한 것이며 南北関係를 착실하게 개선해 나가려는 태도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6.25 南侵을 잊을 수 없는 것이며 休戦後 南北統一의 야망을 가진 무장도발과 地下工作의 책동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南北対話가운데서도 北韓은 牛島와 休戦線 주변에서 무장개릴라를 侵入시켜 우리 国民들의 경각심을 새로이 했다.

우리는 北韓의 再侵과 暴力에 의한 赤化統一의 야망이 포기되었다는 것이 증거로서 확증이 될때 南北間의 軍事問題를 진지하게 論議할 수 있다고 보겠다. 여기서 相互信頼가 重要하다.

北韓側이 주장하는 것처럼 南北間의 電縮등의 電事問題의 合意가

信頼의 表示로 되는 것은 아니다.

軍事問題를 合意할 수 있게 먼지 相互信頼를 가질 수 있게 南 北関係의 개선이 先行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北韓의 主張이 철회되고 우리측이 내놓은 가장 合理的 인 交流가 단계를 밟아 나간다면 統一의 서광은 비관적인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南北調節委員会 分科委員会 構成時의 南北間 通信交流의 方案은 앞에서 論及한 南北赤十字会談에서의 通信交流와는 보다 次元높은 方法으로 進行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各分科委員会의 구성이 되었을때 제반문제가 経済,社会,文 化分野에서 부터 始作되어 검진적으로 政治 外交 軍事問題로 다루 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経済,社会,文化交流가 始作될때 이에 따른 遵信의 役割은 重要한 것이며 各分科姿의 事業発展에 크게 기여할 것은 자명하 일이다.

経済交流가 이루어질때 變方間의 事業진적은 이같은 通信의 매개 체에 의해서 南北間의 経済交流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社会,文化交流에 있어서 学者間의 研究論文 交流 즉 考古学,鳥類学,歷史学 같은 交流부터 단계적으로 시도 하여 이를 漸次 拡大発展시키는 方向으로 나가야 한다.

南北調節委員会의 各分科委員会의 構成으로 變方間의 通信交流의 方案을 좀더 具体的으로 제기해 보면 아래와 같다.

- ① 通信의 役割은 曼方 各分科委에서 相対方의 의사 및 사상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먼저 通信交流를 위한 제반 合意書 및施行規則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施行해 갈수 있는 通信기구의설치가 先行되어야 한다.
- ② 合意된 通信交流에 대한 諸原則을 厳格하게 준수하고 事業 內容에 관한 通信의 秘密보장을 철저히 준수한다.
- ③ 各分科委員会의 事棄성과에 따라 通信交流의 幅을 검진적으로 拡大発展시키며 先 経済,社会,文化交流 後 政治 外交 電事順으로 問題를 타결해야 한다.
- ④ 通信交流의 拡大発展에 따라 必要로 하는 人的 物的 資源은 曼方이 共同 부담하며 高度한 通信技術開発을 위해 共同으로 通信技術教育을 위한 学校를 세운다.
- ⑤ 南北調節姿 各分科姿 事業의 성공적인 拡大発展에 따라 늘 어나는 通信業務를 効果的으로 운용할 수 있는 通信施設을 拡張시 켜야 한다.
- ⑤ 北韓은 通信事業中 電話事業은 公共기관 및 企業所 工場等其他 公的인 시설이외는 일체 私用을 許하지 않고 있으므로 通信의 원활한 交流를 위해 이를 北韓全住民들에게도 시설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 ⑦ 特히 通信交流도 政治,外交,軍事등의 제반문제가 제기될경우 이에 対한 問題를 變方이 타결하는데 重要한 매개체가 된다.

第五章 問題点 및 対策

1. 通信交流時의 問題点

南北間의 通信의 交流時에 提起될 수 있는 問題点은 다음과 같다.

가. 南北赤十字会談을 通하여 1千萬 離散家族 및 친척의 生死 및 住所確認이 어느정도 可能하겠는가?

나. 설령 生死 및 住所를 알고 서신을 보낸다해도 그중 本人에 게 배달되는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다. 大韓民国에서 보내는 適信을 北韓은 厳格하게 검열 이를 情報資料로 収集할 것이다.

라。또한 北韓에서 우리축으로 보내는 通信은 本人의 意思伝達이 아닌 共産党의 거짓 宣伝일 것이다。

마. 北韓에서도 누구를 막론코 大韓民国에 살고있는 家族이나 친척 또는 연고자까지도 生死를 막론하고 전부 報告키로 되어있는데 만일 보고치않은 家族이나 친지 또는 연고자로부터 通信이 날라들었을때 이들이 共産党에 쏣하는 곤욕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바. 南北間의 通信交流가 있을시 北韓의 対南工作에 各種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사· 그리고 北韓측에 大韓民国에 살고 있는 연고자의 안부와 所在를 밝혀줌으로써 그들에게 개별적 宣伝대상을 제공해 줄것이며

그들의 対南工作의 포섭대상을 풍부히 하여주고 따라서 그를 대상으로 対南工作員이 보다 많이 파견되어 이들에게 뜻하지 않은 검은 그림자를 찾아들게 할 우려성이 크다.

아·그리고 通信交流가 된다면 이는 자기들의 이니시어티브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크게 선전할 것이며 또한 南과 北의 1대 1로 대하게 되었다는 것을 과시할 것이다.

자. 그리고 通信의 전달보장이나 이를 確認하는 問題가 어려운 일이며 書信様式이나 그 內容을 제약하는 問題가 있다.

차· 또한 어려운것중의 하나는 서신交流시에 郵票를 使用하는 問題가 제기될 것이며 만일 使用시의 問題点과 사용치 않을시의 問題点이 대두될 것이다.

카· 書信去來에 있어서도 편지봉투나 엽서 또는 기타 通信에서 発信者의 国名을 使用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야 될것인가를 검토하 는 問題가 있다.

타·나아가서는 變方의 通信交流時의 検閲基準方法이다. 이것은 우리측에서는 커다란 問題가 없다고,하겠으나 北韓側으로부터는 厳 格한 검열을 거쳐야 할 것이 명확관화하기 때문이다.

파. 通信交流를 通하여 우리측이 어떻게 하면 自由化의 바람을 北韓쪽에 밀어 넣을수 있는가에 대한 問題이다.

以上과 같은 問題 以外에도 헤아릴수 없으리만큼 問題点이 되는 것이 많다고 하겠으나 기타 제기되는 問題는 다음기회로 미루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대책을 강구하여 보도록 한다.

2. 对 策

南北間 通信交流를 위해 提起될 수 있는 可能한 行動方策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떠한 形態로든간에 南北対話는 継続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北韓측이 南北対話에서 民族的인 立場에서 이탈하고 또 対話의 背後에서 赤化統一을 위한 対南革命戦略의 具現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南北対話의 가치는 경시되지 않아야 한다.

北韓当局에게 誤算을 범하지 않도록 大韓民国에 対한 理解를 도 와주며 同時에 平和統一에 관한 우리의 意志와 誠意있는 努力을 온 계레와 全世界에 모여주어야 한다.

이리하여 対内外輿論이 우리측의 正当한 입장을 支持하고 協助하 도록 해야 한다.

大韓民国을 先進国家의 수준에 끌어 올리고 平和統一 問題에 接近하는데 있어서 南北韓 平和関係의 유지도 必要한 과제로 되고 있다.

그러자면 南北関係의 긴장을 완화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선 南北対話를 通해 상호이해를 증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南北対話는 相対方이 있는 만큼 北韓촉도 対話가 有益하다고 생각하게 하여 対話의 광장을 넓혀 나가도록 해야 한다. 相互埋念과 体制에 관한 問題를 해결 과제로 제기하지 않는다면 南北関係 改善의 길이 얼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상호 接触과 交流를 통해 忍耐性있게 民族的 共通 기반을 넓혀 나간다면 統一의 실마리가 풀리게 될 것이다.

둘째: 南北間 通信交流를 위해선 通信機構 및 이에대한 제규정 그리고 상호 人的,物的 資源의 共同 투자 및 관리가 必要하다.

여기에 대한 問題 특히 通信交流를 위해서는 郵便, 電報, 電話의 시설 및 관리 人員이 必要하며 이들에 대한 變方의 신분보장을 확고히 해야 한다.

通信기구 설치는 南北韓 접경지대인 판문점이 그 좋은 場所로 될 것이나 아니면 서울~평양에 각 분국 설치도 가능하다.

通信 특히 書信交換회수도 變方이 定하는데 따르는 것이 중다.

세째: 通信伝達 保障 및 確認은 變方이 다같이 往復엽서를 使用해서 보낸 書信에 対해선 반드시 받은 측이 白筆로 回答을 보내도록 하되 回答란에 本人의 회신이 기재되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책임있는 当局이 明記하여 돌려보내도록 하고 또한 보낸 편지에 대해서는 變方이 국영방송을 이용하여 편지통수와 個個人의 이름을 発表토록하는 方法을 択하면 비교적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내째: 書信의 交流時 가장 問題되는 것 中의 하나가 郵票의 使用問題이다。

만일 郵票를 使用한다면 우리측은 問題될것도 없겠으나 北韓側에 선 이를 이용하여 김일성의 사진이나 또는 口号를 挿入할 것이 다. 北韓이 이를 使用時 디号가 기입된 우표사용은 역시 묵시적인 국가승인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최선의 方法은 變方이 우표를 使用치 않고 「요금별납」의 形式으로 상호 交流하는 方法이 좋을 것이다.

다섯째: 서신봉투에 주소를 쓰되(発信人) 반드시 国名을 기입 치 않고 道市名以下만 기입해서 交流함이 좋다. 이것 역시 네째 問題의 경우와 같은 問題이다.

여섯째: 6.25 当時 월복자의 名单을 노출시켜 北韓간첩의 남파기도를 좌절시키고 大韓民国에 居住하는 越南者 豕族의 発信人의 職場이나 직책을 밝히지 않으므로서 在北離散冢族에 대한 北韓当局의 보복행위를 最大한 방지토록 努力해야 한다.

일곱째: 北韓에 있는 離散家族이 大韓民国으로 越南한 家族 친척 연고자를 전부 신고제에 의해 신고토록 되었는데 만열 신고치 않은 家族中에서 通信交流가 있을시 北韓当局은 이를 방관하고 있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측은 이를 離散家族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努力해야 한다.

여덟째: 通信交流를 通하여 가장 위험한 것은 北韓의 対南工作을 위한 各種 情報資料를 제공해주며 그들에게 우리측에 살고 있는 연고자들의 소재를 밝혀줌으로서 対南工作의 포섭대상을 제공해 주고 연고자에게 뜻하지 않은 것은 그림자를 만들어 주게 될것이므로 우리측은 이에 대한 變方間의 확고한 보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홉째: 그러나 이들 變方의 合意는 언제나 믿을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國民自体의 투철한 反共意識의 고취를 위해서 最大한 努力을 경주해야 한다.

열째: 앞에서 지적한 제반 方策보다도 가장 重要한 問題는 国 力伸張이다。

南北対話에 있어서도 우리는 北韓보다 우위에 서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자체의 国力을 배양해야 유리한 고기에서 南北対話를 이끌수 있으며 그래서 이를 뒷받침으로 南北의 交流를 점진적으로 전개시 켜나갈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国論統一에 앞장서고 보다 강력한 国力培養을 위해 維新体制로 団結하여 조국의 平和的 統一을 위하여 総力을 경주해야만 한다.